

# 2022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개 요

- ◆ 일시·장소 : 2022. 4. 15.(금) 10:00~13:3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3)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13건

-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5건, 이유없음(기각) 4건), 조사중지 및 종결 2건

### 심의결과

총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13건	12건 (각하 1, 기각(일부 각하 2건 포함) 5, 이유없음(기각) 4, 조사중지 및 종결 2)	1건 (권고 1)	0건

###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2-31	22신청-3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각하(원안가결)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5건, 이유없음 4건, 조사중지 2건)			
22-32	21신청-60, 63,65(병합)	투자출연기관 상사에 의한 인적권 침해	권고(수정가결)
22-33	21신청-133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22-34	21신청-135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원안가결)
22-35	21신청-13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22-36 (1차재양청)	22신청-4	사립시설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22-37	22신청-8	보호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22-38 (이의)	22이의-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21신청-10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39 (이의)	22이의-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21신청-14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0 (이의)	22이의-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22신청-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1 (이의)	22이의-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 21신청-8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42	21신청-114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 (원안가결)
22-43	22신청-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및 사건종결 (원안가결)

## 보고사항

### ○ [의안 제22-31호]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3 (각하) 원안가결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기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7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

## 의결사항

### ○ [의안 제22-32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60, 63, 65(병합) (권고) 수정가결
-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원치 않는

근무지로 인사발령 한 사항을 괴롭힘으로 인정하려면 부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 입증 필요함.

- 일부 피해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과 질책을 받는 과정을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선행 행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발언만으로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신청인이 공사 측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거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서울시에 재신고를 하였는데 공사에서 한번 기각했던 사항을 구제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공사 측 주장과 우리의 판단이 왜 다른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판단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함.
- 피해 사실의 신청시효(1년)가 완성된 사건임에도 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필요함.
- 인사발령과 관련한 부분은 피해자의 불편함은 존재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만한 인과관계의 성립이 어려워 보임. 다만, 피신청인의 과격한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인격권 침해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아울러 권고사항에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함.

#### ○ [의안 제22-33호]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133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협적인 행동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지는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이 지연되자 대기하지 않고 퇴근한 신청인에게 한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지적한 것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 결정함.

#### ○ [의안 제22-34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21신청-135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은 직접 피신청기관에 입소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참고인(연계기관)이 신청인에게 피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곳의 이용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이 자신의 입소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피신청기관에서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신청기관이 신청인의 입소거부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35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1신청-136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도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나, 이 발언이 신청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을 통해 몇 달 후 전해 들었다는 점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당시 피신청인의 발언에 대한 뉘앙스가 서로 달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36호(재)]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인권침해

- 22신청-4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 제3자에 의한 익명의 제보사건으로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고, 제보 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사건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원안 가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참고인 조사가 곤란했던 점을 회의록에 남기고 피신청인2의 부적절한 발언은 인권교육이 필요하나 2차에 걸쳐 기관이 자체 조치한 사항이 있어 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문에 적시하기로 함.

○ [의안 제22-37호] 보호시설 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 22신청-8 (기각 및 일부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 퇴소 절차를 진행한 것은 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로 피신청인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함.
- 다만 이런 사안의 경우 법률의 퇴소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헌법적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피해자가 이 보

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조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적시하기로 함.

○ [의안 제22-38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이의-3(원사건 21신청-10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사건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또한 이의신청은 원결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안을 판단하는 것으로 원결정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의안 제22-39호]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2이의-4(원사건 21신청-14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 결정의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으나, 원 사건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진술 및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40호]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2이의-5(원사건 22신청-1)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사건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진술 및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41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이의-6(원사건 21신청-8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병가 사용자에게 대한 조치는 관리책임자의 재량권에 속하고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42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21신청-114 (조사중지 및 사건 종결) 원안가결
- 신청인이 구두상 종결을 요청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최종의사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회신이 없음. 이에 신청인이 사건조사를 진행할 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2조(조사중지)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를 중시하고 사건을 종결함.

○ [의안 제22-43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22신청-2 (조사중지 및 사건 종결) 원안가결
- 본 사건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보류’로 남아 더이상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인에게 ‘조사중지 및 사건 종결’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2조(조사중지)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사를 중시하고 사건을 종결함.